

청소년유해매체를 판매·대여 금지의 구체적인 표시방법 (제18조제1항 관련)

구 분	표 시 문 구	표 시 방 법
1. 음 반 · 음 악 영 상 물 판매업소	19세 미만 구입 불가	표시문구는 한쪽이 400mm 이상, 다른 한쪽이 100mm 이상인 붉은색 바탕 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 재한다.
2. 비디오물 판매업소		
3. 만화 판매업소		
4. 간행물, 전자출판물, 외국간행물, 정기간 행물 판매업소		
5. 비디오물 대여업소	19세 미만 대여 불가	
6. 만화 대여업소		
7. 간행물, 전자출판물, 외국간행물, 정기간 행물 대여업소		

비고: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
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